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를 위한 청렴 가이드: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가이드는 컨소시엄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GE 베르노바 메시지

GE 베르노바는 공급업체, 계약업체, 컨소시엄 파트너 및 컨설턴트(이하 통칭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확고한 청렴성과 높은 수준의 사업 윤리를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GE 베르노바의 공급업체와의 관계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관행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급업체는 GE 베르노바를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법적 및 규제 요건과 본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를 위한 공급업체 청렴 가이드: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행동 강령"(이하 "가이드")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가이드의 요건에 대해 임직원, 근로자 및 대리인을 교육하여야 하며, 임직원·근로자·대리인·하위 공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해당 요건과 GE 베르노바에 대한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GE 베르노바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완전한 준수를 위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등 본 가이드 준수상의 미비점 및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GE 베르노바와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본 가이드 또는 그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GE 베르노바 매니저 또는 GE 베르노바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sponsibilities of GE Vernova Suppliers

노동 및 인권

공급업체는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에 열거된 권리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GE 베르노바의 의지를 함께하도록 요구됩니다.

존중하는 직장 환경: GE 베르노바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직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정한 근로 조건:** (i)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것, *아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참조*; (ii) 임금, 근로시간, 충분한 휴식, 채용 및 고용 계약에 관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 (iii) 긴급하거나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포함한 주당 근무시간이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iv) 근로자에게 7 일마다 최소 1 일의 휴일을 부여할 것; (v) 매 급여 기간마다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급여 명세서를 적시에 알기 쉽게 제공할 것.

결사의 자유: 근로자가 보복, 협박, 폭력 또는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 가입 또는 결성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단체 교섭을 하며,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를 위한 청렴 가이드: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가이드는 컨소시엄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 **평등 및 차별 금지:** (i)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고용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ii) 괴롭힘 및 불법 차별이 없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¹
- **직장 내 존엄성:** (i) 모든 근로자를 공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하고; (ii) 성별 기반 폭력, 성희롱 또는 기타 괴롭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신체적 강요, 공개적 수치심 또는 언어적 학대 및 그러한 처우의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며; (iii) 이러한 요건을 뒷받침하는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고 근로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것.

강제 노동: (i) 교도소 노동 또는 채무 예측 노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성적·심리적 강압, 착취, 폭력, 강요, 비인도적 처우 또는 인신매매 등 어떠한 형태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ii) 근로자의 신분증 또는 출입국 관련 서류를 압수하거나 파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iii) 근로자가 합리적인 예고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고용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iv) 어떠한 형태의 채용 수수료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부담시키지 않도록 보장할 것; (v) 사기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채용 관행 사용을 금지할 것; (vi) 고용 종료 시 근로자(해외 모집 입국 근로자의 경우)에게 귀국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보장할 것; (vii)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나, 기숙사 또는 거주 공간을 포함한 회사 제공 시설의 출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없도록 보장할 것; (viii)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제공할 것.

아동 노동 및 연소 근로자: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 연령에 관한 제 138 호 협약 및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에 관한 제 182 호 협약에 따라: (i) 16 세 미만(또는 현지 법정 연령이 더 높은 경우 해당 연령 미만)의 근로자 고용을 금지할 것; (ii) 18 세 미만(또는 현지 법정 연령이 더 높은 경우 해당 연령 미만)의 근로자를 위험한 근무 조건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 (iii)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iv) 연소 근로자(16~18 세)가 위험한 근무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v) 적용 가능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것.

¹ GE 베르노바는 채용 및 고용 전반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참전 용사 지위, 법적 보호대상 유전 정보, 혼인 또는 가족 관계, 그 밖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성에 근거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이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인력 감축 또는 해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를 위한 청렴 가이드: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가이드는 컨소시엄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환경, 보건 및 안전: 적용 가능한 모든 환경, 보건 및 안전(EHS)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다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i) 화재 및 비상 계획에 필요한 관련 허가를 유지하고 법적으로 준수하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 및 유지할 것; (ii) GE 베르노바 사업장 또는 GE 베르노바 고객 사업장 내에서 작업 시 GE 베르노바의 인명 안전 수칙 및 적용 가능한 EHS 요건을 준수할 것; (iii) 근로자가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받고 착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문서화할 것; (iv) 제공되거나 주선된 숙소에 대해 현지 국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그리고 (v)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 완화 방안을 이행하고 문서화할 것.

환경 영향 및 보호: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 관행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i) 대기 배출, 수질 방류,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유해물질·위험물질의 사용·보관·관리·처리, 및 산업 위생에 관한 허가, 면허 및/또는 등록을 포함한 관련 허가를 유지하고 (ii) 오염, 대기 배출, 수질 방류,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유해물질·인화성물질·위험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의 환경적 영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할 것.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 (i) 몬트리올 의정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미국 유해물질 관리법(TSCA), 유럽연합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 및 REACH 법령, 기타 이에 준하는 화학물질 규정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질 및 소재를 GE 베르노바에 판매되는 제품 개발, 제조 공정, 포장 및 최종 제품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할 것. 단, GE 베르노바가 해당 물질 및 소재의 포함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ii) GE 베르노바의 요청 시, GE 베르노바가 지정한 플랫폼을 통해 GE 베르노바에 판매되는 제품에 포함된 원자재, 광물, 구성 성분 및 물질과 해당 제품 제조 시 사용된 에너지 및 발생된 배출량에 관한 뒷받침 데이터를 제공할 것; (iii) 주석, 탄탈럼, 텅스텐 및 금("3TG")이 포함된 제품을 GE 베르노바에 공급하는 경우, 3TG 광물의 출처 및 관리 사슬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사를 실시할 것; (iv) GE 베르노바에 공급되는 제품에 3TG가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기타 분쟁 영향 지역이나 고위험 지역(책임광물이니셔티브의 정의에 따름)의 무장 단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의 광물 책임 공급망에 관한 OECD 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된 실사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합리적인 약속을 제공할 것.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를 위한 청렴 가이드: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가이드는 컨소시엄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윤리, 공정 사업 관행 및 거버넌스:

정부 거래, 부적절한 지급 및 GE 베르노바 임직원과 대리인과의 거래: 다음을 유지하고 시행합니다:

(i) 뇌물 수수 금지를 포함한 합법적인 사업 관행 준수를 요구하는 정책; (ii) GE 베르노바 조달, 거래 또는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GE 베르노바 임직원, GE 베르노바 대리인, GE 베르노바 고객 또는 정부 관계자에게 현금, 선물, 접대, 취업 제공 또는 기타 형태의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뇌물 또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금지; 그리고 (iii) GE 베르노바의 요청 시 증빙 데이터 제공.

경쟁법: GE 베르노바 조달 제안, 진행 중 또는 현재의 조달과 관련하여 가격, 비용 또는 기타 경쟁 정보를 제 3자와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할 것.

지식재산권: 모든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포함하여 GE 베르노바 및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것.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i) GE 베르노바 개인정보를 책임감 있고 법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집, 처리 및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할 것; (ii) GE 베르노바 기밀 정보²의 무단 또는 불법적 파괴, 변조, 수정 또는 우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GE 베르노바 기밀 정보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GE 베르노바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물리적, 관리적 및 기술적 통제를 이행하고 유지할 것; (iii) 범죄적 또는 테러 개인 및 단체에 의한 악용으로부터 공급업체의 운영 및 시설을 보호할 것.

무역 통제 및 통관 사항: GE 베르노바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GE 베르노바 기술 정보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지하며, 물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술 데이터의 수입,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 시 권한 없는 자 또는 단체의 접근 또는 사용에 관한 제한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모든 무역 통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

재무 통제 및 세법: GE 베르노바 또는 정부 당국에 제출되거나 GE 베르노바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 3자에 의해 감사되는 모든 청구서 및 통관 또는 유사 서류가 제공되거나 납품된 물품 및 서비스와 그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보장할 것. 또한 모든 문서, 통신 및 회계가 정확하고 정직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조세 포탈 또는 조세 포탈 조장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

² GE 베르노바 기밀 정보란 GE 베르노바가 생성하거나 수집한 정보로서,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사용될 경우 GE 베르노바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보를 말하며, GE 베르노바 최고 기밀 정보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를 위한 청렴 가이드: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가이드는 컨소시엄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해충돌: 모든 이해충돌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의 외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할 것. 관련 이해충돌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이익이 공급업체의 편견 없는 업무/서비스 수행 능력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때 발생합니다. 공급업체는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GE 베르노바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급업체 또는 그 임직원의 개인적 이익과 GE 베르노바의 이익 간의 잠재적 또는 외견상 충돌 상황이 포함됩니다.

위험 관리: 공급업체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령 및 규정과 본 가이드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위험 관리 시스템은 공급업체의 규모, 운영 환경 및 우선적 위험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실사: 본 가이드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일관된 절차를 채택할 것.

고충 처리 절차 및 근로자 소통: 본 가이드의 요건과 관련된 우려 사항 또는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익명의 공정하고 공개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 사항 및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록, 공개 및 감사 권한: 본 가이드의 요건에 대한 공급업체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하고, 요청 시 GE 베르노바에 해당 기록을 제공할 것. 공급업체는 다음을 포함하여 본 가이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GE 베르노바의 노력에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i) GE 베르노바가 공급업체에 합리적인 사전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GE 베르노바의 공급업체 방문, 검사 또는 감사를 허용할 것; 그리고 (ii) GE 베르노바가 요청한 시정 조치를 적시에 이행할 것.

GE 베르노바는 공급업체가 본 가이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를 위한 청렴 가이드: GE 베르노바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가이드는 컨소시엄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도움 받기 - 질문 또는 우려 사항 제기 방법

현지 법령 및 해당 신고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에 따라, 각 공급업체는 해당 사안이 공급업체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가이드와 관련하여 GE 베르노바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GE 베르노바에 신속히 알릴 것이 요구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GE 베르노바 및 공급업체와 관련된 해당 사안의 조사에 있어 GE 베르노바를 지원하기 위해 GE 베르노바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업무가 미국 정부 계약과 관련된 경우, 공급업체는 본 가이드의 위반 혐의를 GE 베르노바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 GE 베르노바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질문 또는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GE 베르노바 매니저와 상담; 또는
- GE 베르노바 옴부즈만 및 공개 신고 헬프라인에 전화:
미국/캐나다 - +1800 261 0643 또는 런던 국제 지원 센터 +44 20 3769 3297; 또는
- GE 베르노바 사내 옴부즈만에게 이메일(Corporate.OmbudsgOqevernova.com)로 연락; 또는
-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연락 (예: GE 베르노바 법률 고문 또는 감사인)

참고: 공급업체는 위반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확신이 없더라도, 부적절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책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는 경우 우려 사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GE 베르노바는 제기된 모든 청렴 관련 우려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GE 베르노바는 선의로 우려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